

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(송 바우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/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3. 6
제출자 : 송 바우나 의원 등 10인

1. 제정이유

- 지방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분권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안산시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추진계획, 정책과제의 촉진,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. (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)
- 지방분권 협의회의 설치,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
- 지방분권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불임 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2

5. 비용추계서 : 불임 3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6. 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018.2.27.~ 3.5.(입법예고 기간)

8. 기타 참고사항 : 관련부서 검토의견서

【불임 1】

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,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방분권”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,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,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) 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지방분권 정책과제·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
3.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정책과제의 추진) 시장은 시민·시민사회단체·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,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민참여의 확대) 시장은 시민의 지방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방분권협의회 설치)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분권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,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2.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

3.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
4.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시민사회단체, 안산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,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해제)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협의회 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14조(경비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송 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9)